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69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박범계 · 임오경 · 전용기

이강일 • 백승아 • 채현일

장종태 · 김영화 · 이기헌

이개호 · 김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 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 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하며,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전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 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 수 및 소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 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보험료액산정의기준이 된 보수및소득을 말하며,이하이조에서 "기준소득"이라한다)에비례하여지급하되,가입자 전원의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 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u>장제비, 상병수</u> 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50조(부	가급여) -	
		<u>장제비</u>